

## 제 12 장 전자상거래

### 제 12.1 조 목적과 원칙

1. 양 당사국은 전자상거래가 제공하는 경제적 성장 및 무역 기회, 그 이용 및 발전에 대한 장벽 회피의 중요성, 그리고 전자상거래에 영향을 미치는 조치에 대한 세계무역기구 협정의 적용 가능성을 인정하면서, 특히 이 장에 따른 전자상거래로부터 발생하는 사안에 대하여 협력함으로써 양 당사국 간 전자상거래의 발전을 증진하기로 합의한다.
2. 양 당사국은 전자상거래 이용자의 신뢰를 보장하기 위하여, 전자상거래의 발전이 자료 보호의 국제기준과 충분히 양립가능해야 한다는 것에 동의한다.

### 제 12.2 조 관세

1. 어떠한 당사국도 전자적 수단에 의한 제품의 수입 또는 수출에 대해 또는 이와 관련하여, 관세, 수수료 또는 부과금을 적용할 수 없다.
2.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, 이 장은 당사국이 전자적으로 전달되는 제품에 대해 내국세 또는 그 밖의 국내 부과금을 부과하는 것을 배제하지 아니한다. 다만, 그러한 조세 또는 부과금은 이 협정과 합치하는 방식으로 부과되어야 한다.

### 제 12.3 조 온라인 개인 자료 보호

각 당사국은 전자상거래 이용자의 개인 자료의 보호를 보장하는 조치를 채택하거나 유지한다. 개인 자료 보호 기준의 개발에 있어, 각 당사국은 관련 국제기구의 국제 기준 및 표준을 고려한다.

### 제 12.4 조 종이없는 무역 행정

1. 각 당사국은 무역행정문서가 대중에게 전자적 형태로 이용가능하도록 노력한다.
2. 각 당사국은 전자적으로 제출된 무역행정문서를 종이 형식의 그러한 문서와 법적으로 동등한 것으로 수용하도록 노력한다.

## 제 12.5 조 소비자 보호

1. 양 당사국은 소비자가 전자상거래에 참여할 때 사기적이고 오도하는 상업적 관행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투명하고 효과적인 조치를 유지하고 채택하는 것이 중요함을 인정한다.
2. 양 당사국은 소비자의 복지를 제고하기 위하여 국경 간 전자상거래와 관련된 활동에 관한 각 당사국의 국가 소비자 기관 간의 협력이 중요함을 인정한다.

## 제 12.6 조 협력

1. 양 당사국은 전자상거래로부터 발생하는 사안에 대해, 특히 다음을 다룰 협력 메커니즘을 설립하기 위해 노력한다.

- 가. 대중에게 발급되는 전자 서명 인증서의 인정과 국경 간 인증 서비스의 원활화
- 나. 개인 자료의 보호
- 다. 정보의 전송 또는 저장에 관한 제공자의 책임
- 라. 요청하지 않은 상업용 전자 서신의 취급
- 마. 전자상거래의 보안
- 바. 전자상거래 분야에서의 소비자의 보호, 그리고
- 사. 전자상거래의 발전과 관련된 그 밖의 모든 사안

2. 양 당사국은 전자상거래와 관련된 법과 규정에 대한 정보 및 경험을 공유하기 위해 노력하고, 미소 및 중소기업이 전자상거래를 이용하면서 겪는 장애를 극복하는 것을 도와주기 위해 협력한다.

3. 전자상거래의 전지구적 성격을 인정하면서, 양 당사국은 전자상거래의 발전을 증진하기 위해 지역 및 다자 협의체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고, 전자상거래와 관련된 사안에 대해 그러한 협의체의 틀 내에서 필요한 경우 의견을 교환하기로 합의한다.

## 제 12.7 조 다른 장과의 관계

이 장과 이 협정의 다른 장 간 불합치가 있는 경우, 그 불합치의 한도에서 다른 장이 우선한다.

## 제 12.8 조 정의

이 장의 목적상,

**개인 자료**란 식별된 또는 식별 가능한 자연인에 관한 모든 정보를 말한다.

**무역행정문서**란 상품의 수입 또는 수출과 관련하여 수입자 또는 수출자에 의해 또는 그를 위해 작성되어야 하는 것으로서 당사국이 발행하거나 관리하는 양식을 말한다. 그리고

**요청하지 않은 상업용 전자 서신**이란 인터넷 운반 서비스 또는 그 밖의 통신서비스를 이용하여, 수령인의 동의 없이 또는 수령인의 명백한 거부에도 불구하고 소비자에게 상업적 목적으로 송부되는 음성 또는 팩스 서신을 포함한 전자 서신을 말한다.